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담지원기관의 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5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개요)	10

I. 개요

1. 제안 경위

-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11.
- (3) 회 부 일 : 2025. 4.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범

죄 등을 결격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6조의2(종사자 등의 결격사유)</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u> <u>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u>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u> <u>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u>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u>

현행	개정안
	<u>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2. 주요 검토 사항

- 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화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로 국가의 책임 하에 보호하는 것임.
- 2024년 7월 19일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말까지 보호출산 상담 및 신청 현황을 보면, 1,395명의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5,313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원가정 양육 선택 128명, 보호출산은 90명이 신청하였으나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¹⁾을 거쳐 17명이 신청을 철회하여 73명이 보호출산을 선택하였음.
- 특히 ‘상담’은 위기 임신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바, 이를 위하여 중앙·지역상담기관이 지정되어 있고(참고자료 1),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
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5. 지역상담기관 관리·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1. 설치기준

다. 인력기준

1) 상담인력은 직원 4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 중 2명 이상은 전임으로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팀장은 겸임·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2)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상담인력을 배치할 것

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 임신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개정안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상담의 질 및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개정안에서는 일반 형사처벌의 경우보다 종사하려는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성범죄 등에 관한 형사처벌의 경우 결격기간을 더 길게 규정하고 있음²⁾.

□ 다만, 개정안 제6조의2제2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⁴⁾)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⁵⁾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에서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그로부터 일정 기간까지를 결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기간을 차별화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³⁾)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25. 4. 29.>

2) 기본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해당 법률이나 그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른 자격 등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확보할 당위성이 있는 경우 관련성이 적은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실도 결격사유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비하여 결격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p.37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울러,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상담기관의 종사자를 최초로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⁶⁾’는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신부 대상 고도의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 결격사유 규정 마련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500

3)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담사도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결격사유를 준용함.
4)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경우(「형법」 제76조제1항)
5) 형의 시효 완성(「형법」 제77조), 특별사면 중 일정한 경우(「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6)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법률 제11239호, 2012.1.26>
제2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 중앙상담지원기관 개요

- (법적근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3조
- (수행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 (수행 업무) 지역상담기관 관리, 업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운영 지원
- (사업 예산) '25년 국비 564백만원

□ 지역상담기관 개요

- (법적근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제2항·3항 및 규칙 제4조
 - (수행 기관)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한부모가족시설 또는 아동 복지시설로, 서울 애란원 등 16개소 지정
 - (수행 업무)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법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 위기임산부 대상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산발적 민간 상담* 대체), 긴급·응급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7일/24시간 대응 중
 -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독려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임신·출산·양육 지원 제도* 연계, ▲민간 자원 발굴 및 협업** 등 추진
- * 아동수당·부모급여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산후도우미 지원 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등 연계
 ** 공동모금회, 아동·위기임산부 분야 공익·비영리법인 등
- (사업예산) '25년 국비 2,053백만원 (서울 50%, 그 외 지방 70%)